

청주교육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점 상호인정 규정

제정 2001. 3. 1. 규칙 제1067호
제1차 개정 2005. 5.12. 규칙 제1125호
제2차 개정 2009. 2. 4. 규칙 제12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2(대학원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점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교무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 대학 수학

제3조(자격) 외국대학에서의 수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1년 이상 재학 중인 자
2. 기 이수한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2.75이상인 자(대학원 3.25이상)
3. 수학을 희망하는 해당국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
4. 학칙 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지원) ① 지원자는 학술교류협정(자매결연)이 체결된 대학 중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외국대학을 지원한 때에는 해당대학 적합여부를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 대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는 외국대학 수강 희망시기 개시 4개월 이전에 지도(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자는 제5조의 지원 서류를 갖추어 해당학과(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학과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 수학허가신청서 1부(별지 1)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학과장(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6조(선발) ① 학과장(대학원장)은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2주 이내로 교육지원과(대학원)에 송부하여야, 교육지원과(대학원)에서는 교무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추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판별한 후 최종 선발한다.

③ 대학 간 교류협정에 의하여 교류학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선발한다.

제7조(수학기간)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등록) ① 외국대학에서의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휴학 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학기를 인정받지 못한다.

③ 외국대학 등록 시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 및 수학 희망 외국대학의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9조(교과이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 수학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학예정 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 목록과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교과목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이어야 한다.

2.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 수강 신청 전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학점인정) ① 학생은 수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를 교육지원과(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 범위는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에서는 학기 당 18학점 이내로, 총 30학점 이내에서 인정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석사과정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와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최종 인정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교과목 및 학점, 성적 등은 본교의 교과목 및 학점, 성적으로 환산하여 시행한다.

제3장 외국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1조(수학신청) 외국학생이 본교에 수학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육센터(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 교류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주교육대학교 수학허가신청서 1부(별지 2)
2.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국제교육센터(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수학허가)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여부는 국제교육센터(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외국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본교에서 정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학생 중 등록금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제교육센터 전담 교수(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실시한다.

제16조(성적처리 등) ① 외국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외국 학생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이용) 외국학생에게는 도서관, 전산실, 실습실, 기숙사 등의 학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2. 4. 규칙 제12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외국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소속	학과			학년		
성명	(한글)	본교등록 여부	등록()	주민등록번호		
	(한자)		휴학()	학번		
수학구분	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기타학생()					
수학신청대학						
학기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어능력	영어권 : TOEFL 점, 비영어권 :					
수학계획	이수예정교과목			본교관련교과목		학과장 확인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위와 같이 외국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경 유	지도교수	학과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 이수예정 교과목 설명서 각 1부.

(별지 2)

청주교육대학교 수학 허가 신청서

성명			성별		사진
전화번호	본국)	외국인 등록번호			
	한국)	생년월일			
주소	본국) 한국)				
소속대학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지원대학	청주교육대학교		학과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학예정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수	개설학부·학과	비고	

위와 같이 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경 유	지도교수	학과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첨부 : 학과장 추천서 1부.